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안 번호	2018~115
----------	----------

제출일자 : 2018.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1. 제안이유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등 민원발생 지역으로 터미널 이용객 불편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간)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596번지 일원
- 취득면적 : 2,930m²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군비 750, 지특 750)

※ 군비 2019년도 예산 편성,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 계획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930	346,618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6	답	1,678	198,507	2019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매입	이*희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7-1	답	588	69,560	2020		이*희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7-6	답	664	78,551	2020		이*희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18. 3. ~ 8. :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 실시
- 2018. 11.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라. 향후계획

- 2018.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 10. ~ 11. : 토지 소유자 동의 및 간담회 실시
- 2019. 1. : 감정평가 및 일부 토지보상 실시
- 2019. 3. :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 및 확보
- 2020. 1. : 사업 시행

마.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 도모
-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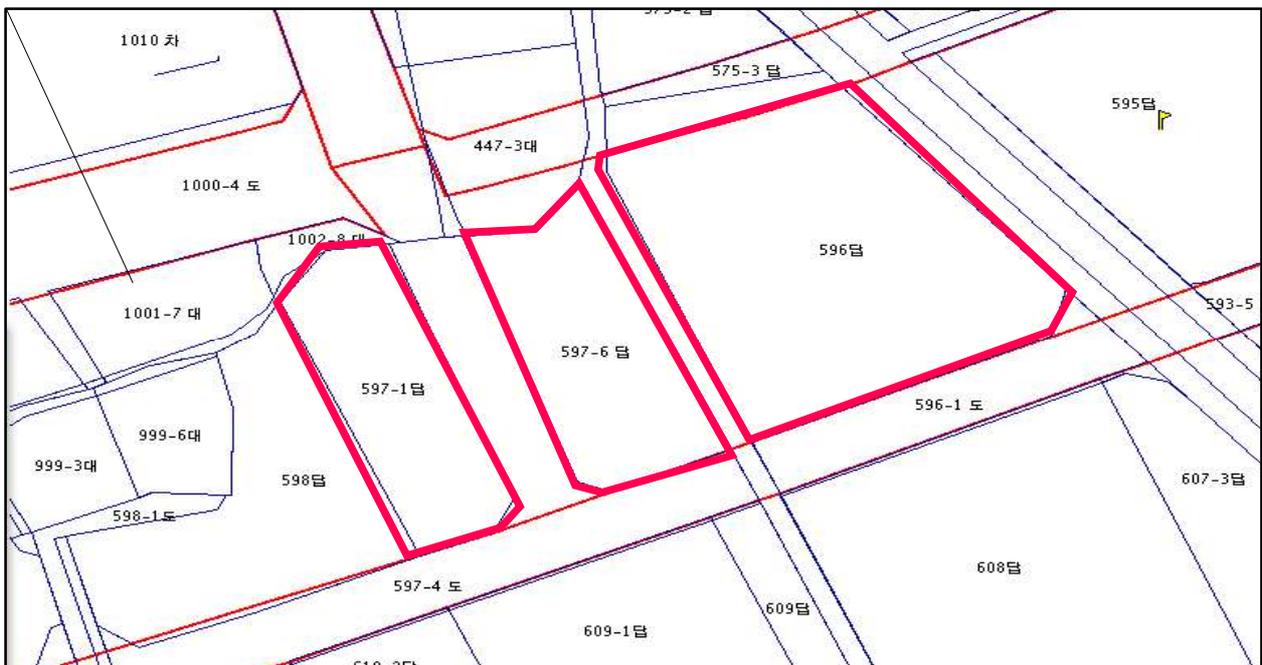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5. 지적도



② 가수정(假睡亭) 주변 다목적 쉼터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름 휴식처로 사용하던 장소를 기념하여 가수정이라 이름짓고 바위에 새긴 역사가 있는 자연 유원지이며,
- 큰 일교차에 의한 고당도 해따지 (고제)사과 매입을 위한 도매상 및 직거래 상인 등 고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놀이를 위한 가수정 방문 관광객이 증가 추세
- 가수정 주변 다목적 쉼터를 조성하여 고제 대표 쉼터로 활용 및 해따지 사과 판매장소로 활용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440-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잔디블럭 주차장, 잔디광장, 벤치, 하천보, 출렁다리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814	15,345			
취득	토지	고제면 봉산리 440-1	답	445	3,764	2019	가수정 주변 다목적쉼터조성	번*식
취득	토지	고제면 봉산리 516-1	답	1,369	11,581	2019	가수정 주변 다목적쉼터조성	김*주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가수정 정자 복원 : 2010년
- 주변 토지 기확보 : 봉산리 517 (2008년 고제주거환경정비사업)

라. 향후계획

- 2019. 3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19. 4월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6. 현장사진(가수정 전경)



7. 현황사진(주변 전경)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1. 제안이유

- 최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은 행위제한 및 재산상 손해 등 민원을 우려하여 사유지를 최대한 배제(공원 축소·해제 등)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극 매입하는 추세임
-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49-1 외 1
- 토지면적 : 3,461m²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61	50,184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9-1	전	1,170	16,965	2019	자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신*범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52	전	2,291	33,219	2019	자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신*범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거열산성 군립공원 지정(1983. 11월)
- 거열산성 군립공원계획 결정 고시(거창군 고시 제2012-121호)
- 거열산성 군립공원계획 지형도면 고시(2013. 1월)
-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2014년 ~ 2016년)
 -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 거창읍 상림리 670 외 2필지
 - 거열산성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 거창읍 송정리 1051 외 2필지

라. 향후계획

- 2019. 3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19. 4월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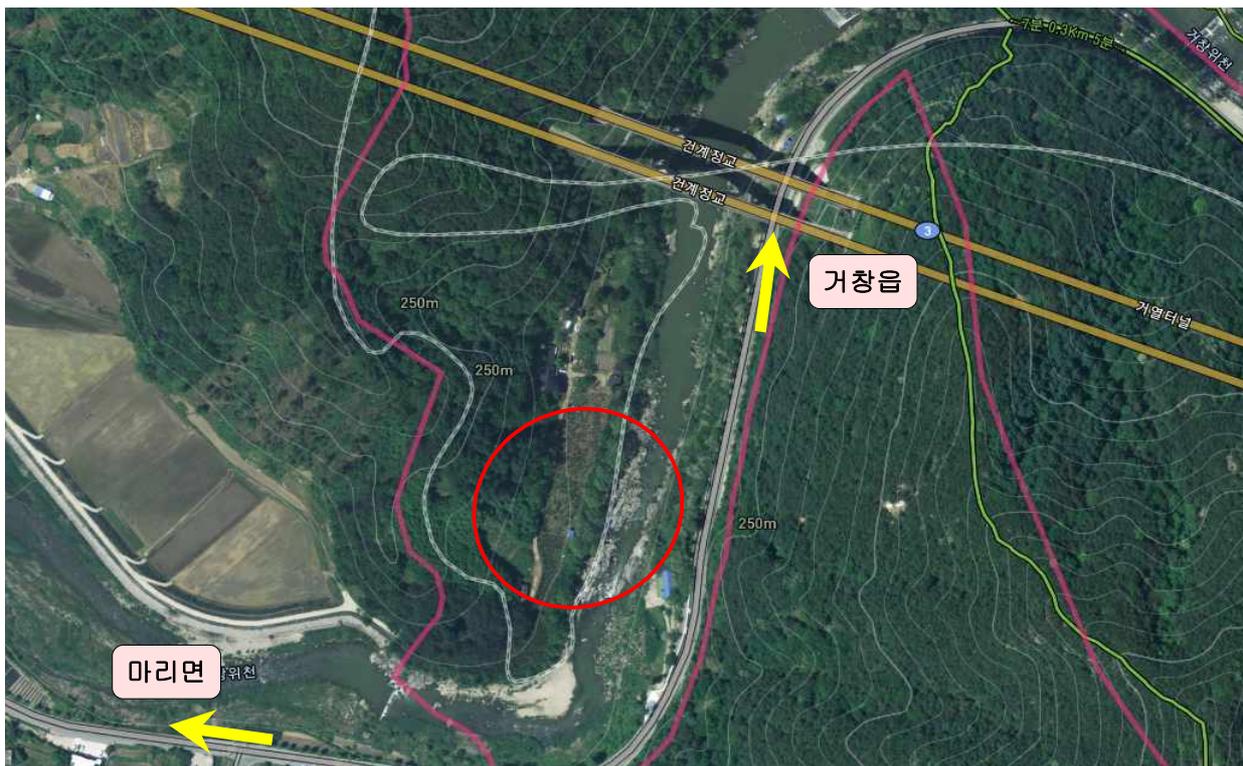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관리계획 수립 가능
- 군립공원 지정으로 장기간 침해되었던 사유 재산권 보장 및 고충 민원 해결
- 공원이용의 다변화 및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이용객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자연공원법』 제76조(협약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4 「다목적체육관」 건립

1.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2.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 외 4필지
- 대지면적 : 8,749㎡ (토지소유자 : 박진효 외 4인)
- 건축규모 : 지상 1층 체육관(연면적 2,541㎡)
- 사업기간 : 2019. 3. ~ 2021. 12.
- 사 업 비 : 9,900백만원(부지매입비 : 1,600백만원)
- 주요기능 :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로 활용

3.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8,749	226,599,100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1092	답	661	17,119,900	2019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박*효
		거창읍 양평리 1092-1	답	2,106	54,545,400			이*원
		거창읍 양평리 1092-2	답	2,098	54,338,200			이*백
		거창읍 양평리 1125-7	답	2,035	52,706,500			신*성
		거창읍 양평리 1125-6	답	1,849	47,889,100			신*범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포츠파크 내 입지한 실내체육관 공간이 협소하여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어려움

- 군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 조성된 스포츠파크와 연계가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 체육 및 문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문화시설 제공하고 체육 분야 인재 육성
-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

5. 향후계획

- 2019. 01. 본예산(부지매입비)
- 2019. 03. 토지보상 등 부지 매입 실시
- 2019. 07 다목적체육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 2020. 03 다목적체육관 공사 착공
- 2021. 12 다목적체육관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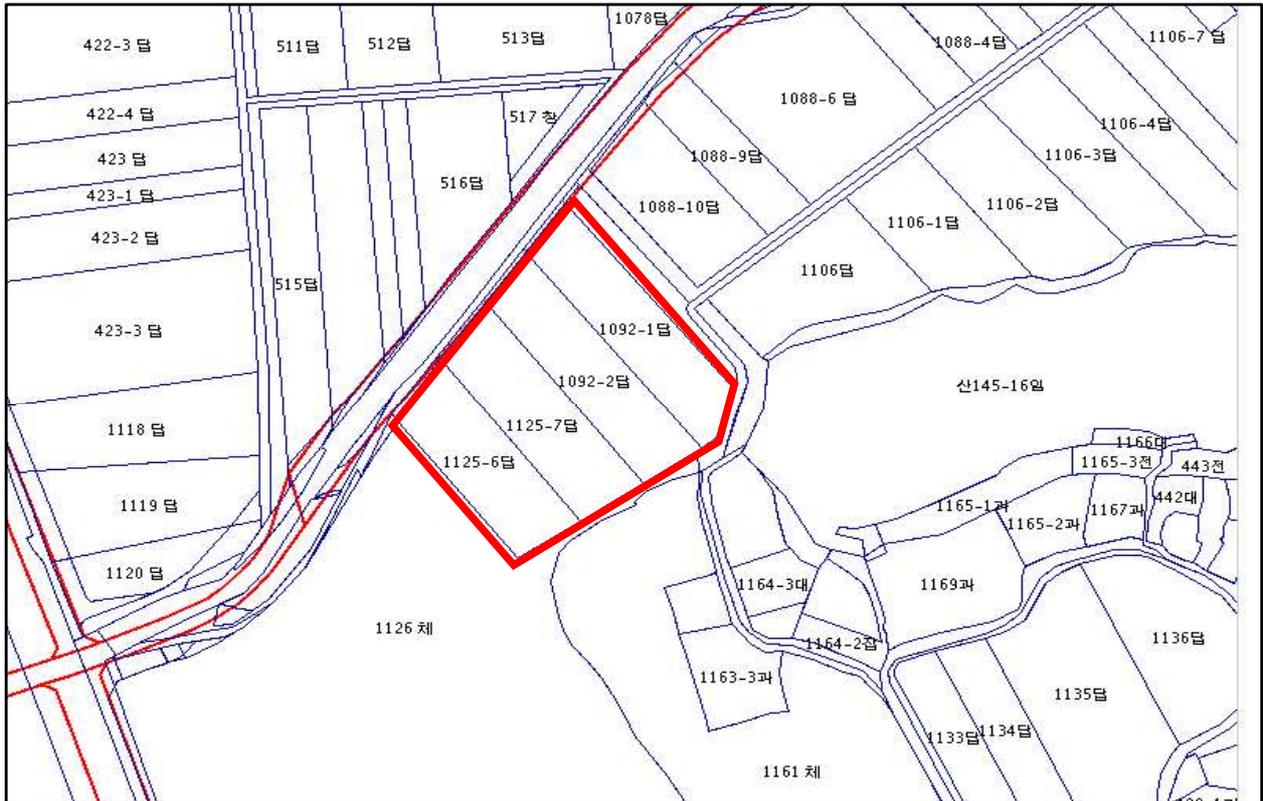
6.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7. 위치도



8. 지적도



9. 현장사진



⑤ 「축구전용구장」 조성

1.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축구전용구장 조성 및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취득

2.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85-4 외 32필지
- 대지면적 : 42,717㎡ (토지소유자 : 이종환 외 23인)
- 사업기간 : 2019. 7. ~ 2021. 12.
- 사 업 비 : 8,000백만원(부지매입비 : 4,100백만원 정도)
- 주요기능 : 축구전용구장(110m×75m)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3. 취득재산의 표시

- 거창읍 양평리 1085-4번지 등 33필지, 42,717㎡
- 취득재산 세부 내역 : 따로 붙임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 및 시대적 발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체육시설의 적극적 사용자인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 공간 부족을 해결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

5. 향후계획

- 2019. 03. 경상남도 투자심사 신청

- 2019. 04. 균특 예산 사업비 신청
- 2019. 07. 토지보상 등 부지매입 실시
- 2020. 03 축구전용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 2020. 07 축구전용구장 공사 착공
- 2021. 12 축구전용구장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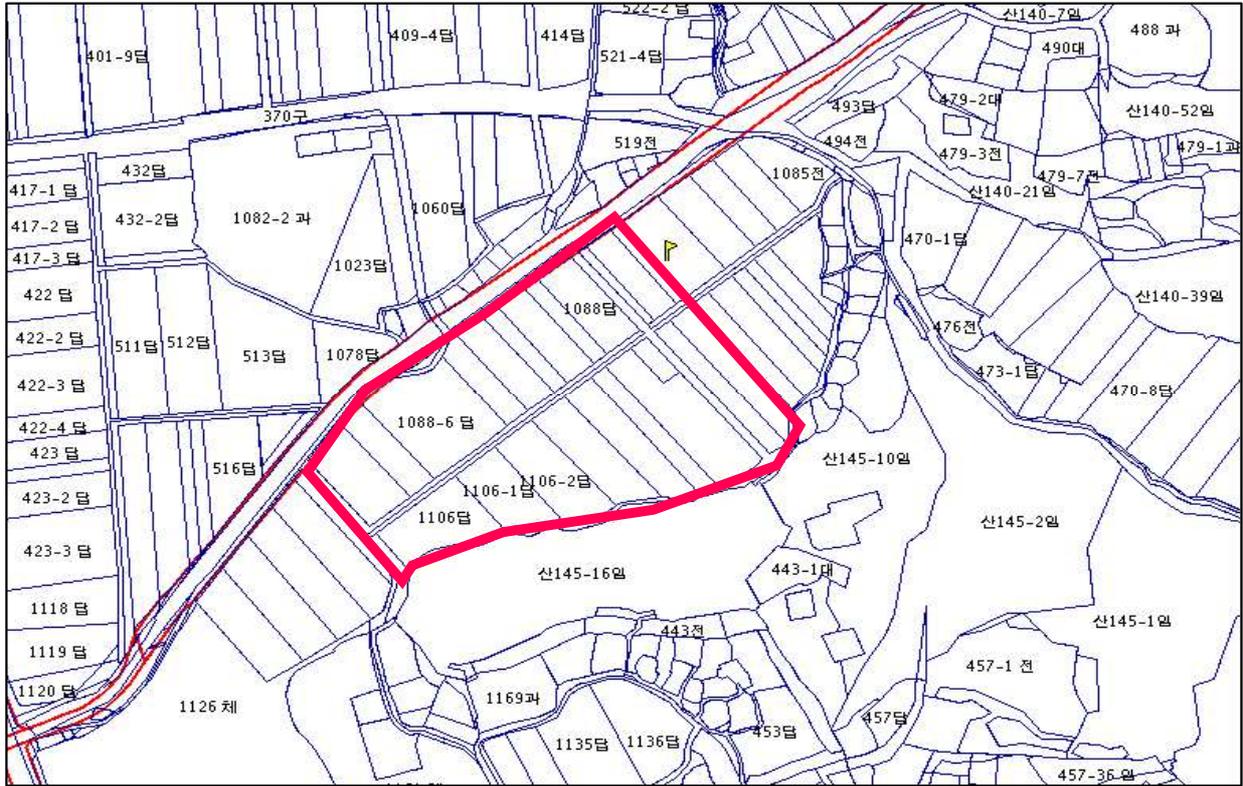
6.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7. 위치도



7. 지적도



8. 현장사진



【붙임】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번	부 번	지 목	면적					
계						42,717	916,151,210				
취 득	토 지	거창읍 양평리	1085	4	답	1,869	48,407,100	2019 년	촉구 전용구 장 조성	이*환	
		거창읍 양평리	1085	5	답	420	10,878,000			이*환	
		거창읍 양평리	1085	6	답	1,073	27,790,700			정*현	
		거창읍 양평리	1085	7	답	362	9,375,800			박*근	
		거창읍 양평리	1088	0	답	1,628	42,165,200			신*웅	
		거창읍 양평리	1088	1	답	616	15,954,400			신*현	
		거창읍 양평리	1088	2	답	1,322	34,239,800			신****중중	
		거창읍 양평리	1088	3	답	727	18,829,300			김*남	
		거창읍 양평리	1088	4	답	1,332	34,498,800			박*원외3인	
		거창읍 양평리	1088	5	답	1,034	26,780,600			박*원외3인	
		거창읍 양평리	1088	6	답	3,615	93,628,500			이*우	
		거창읍 양평리	1088	9	답	1,213	31,416,700			신*문	
		거창읍 양평리	1088	10	답	1,865	48,303,500			신*범	
		거창읍 양평리	1093	0	전	98	4,253,200			박*원외3인	
		거창읍 양평리	1106	0	답	2,125	49,725,000			이*훈	
		거창읍 양평리	1106	1	답	1,630	35,045,000			박*철	
		거창읍 양평리	1106	2	답	2,149	46,203,500			박*서	
		거창읍 양평리	1106	3	답	1,997	42,935,500			김*남	
		거창읍 양평리	1106	4	답	1,797	38,635,500			신*욱	
		거창읍 양평리	1106	5	답	1,127	24,230,500			신*오	
		거창읍 양평리	1106	6	창	356	8,722,000			신*오	
		거창읍 양평리	1106	7	답	2,975	63,962,500			신*오	
		거창읍 양평리	1117	0	답	1,288	27,692,000			박*효	
		거창읍 양평리	1117	1	답	1,698	36,507,000			이*란	
		거창읍 양평리	1117	2	답	988	21,242,000			이*란	
		거창읍 양평리	1117	3	답	1,534	32,981,000			김*곤	
		거창읍 양평리	1080	0	구	140	992,600			국(농림수산부)	
		거창읍 양평리	1085	8	도	518	3,672,620			국(농림수산부)	
		거창읍 양평리	1085	9	도	552	3,913,680			경상남도	
		거창읍 양평리	1086	0	구	3,447	24,439,230			국(농림수산부)	
		거창읍 양평리	1090	0	도	1,022	7,245,980			국(농림수산부)	
		거창읍 양평리	1094	1	도	126	934,920			경상남도	
		거창읍 양평리	1094	2	도	74	549,080			경상남도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 국공유지는 무상귀속 협의 후 취득 추진예정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